

의안번호	제 11 호
의결연월일	

의결사항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4. 5. 3

#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
----------	----

제출연월일	2004. 5. 3
제출자	사천시장

## 1. 의결주문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상의 개정된 용어대로 조례의 자구를 수정 (안 제2조)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류 폐기물

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 (안 제7조)

○ 1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자 중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9조)

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대상의 근거를 마련 (안 제10조)

마. 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규격을 시장이 따로 결정하여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5조)

바. 쓰레기봉투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규정  
(안 제20조)

사.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따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22조)

####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4. ~ 2004.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개정조례안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소규모주택수선 및 일련의 공사·작업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캔류·빈병류·철재류·농업용비닐·페스티로폴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6. "폐기물포대"라 함은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깨진유리·나무조각·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1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한 포대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차 수거용봉투"라 함은 시직영 수거방법에 준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14. "대행업체 수거용봉투"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시장이 허가한 영업구역내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봉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토지·건물 청결유지)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분리배출지역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연탄재, 대형폐기물, 쓰레기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
2.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폐건전지

②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류 폐기물,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배출자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을 종류별로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사천시폐기물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할것.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할것. 다만,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터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터 미만으로 할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할것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할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할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할것
  - 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다만, 제9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도·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생활폐기물처리 대행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처리)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모에 의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의 종류 및 제작) ①생활폐기물의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종류는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폐기물포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생활폐기물 배출용기는 시장이 색깔, 문구, 용량, 두께, 재질, 모양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장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로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등 성상별로 분리 배출 후 공사장 배출자가 최종 운반장소까지 직접 운반 할 것
2. 공사장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가 운반코자 할 때에는 운반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배출사유, 배출기간, 운반차량 및 운반차량, 운반장소, 운반기간 등을 시장에게 사전신고 할 것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방법 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시장이 결정 고시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 할 것
2.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할 것

②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 ③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판매자는 신고된 판매소 이외의 장소 또는 이동하면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 한 때
2.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외 타 장소로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때
5.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기타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22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 결정) ①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폐기물포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 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폐기물포대의 제작비용
4. 적정 판매이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6조제2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할 경우의 처리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거용기의 제작비용
4. 적정 판매이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제16조제1항에 의해 배출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5조의2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 한다.

②쓰레기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마대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구입시에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된 것으로 본다.

③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읍·면·동에서 직접 부과·징수 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어구류(폐그물)에 대하여는 자체운반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자체운반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제22조제4항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⑥재활용품 및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처리장의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결정 고시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다량의 생활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자
2. 일반인이 적합한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어구류(폐그물), 대형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다만, 폐기물 배출신고를 필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대금을 판매소로부터 고지서에 의거 선납 받아야 한다.

②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생활폐기물일 경우 건당 30,000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인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이 결정 고시되기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봉투제작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전량 소모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m <sup>2</sup>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b>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b>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처리계획	감량처리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p>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서명또는날인)</p>							
<b>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b>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p>사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천시장인</p>							

< 별지 제2호 서식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활용			
		자가감량방법	자가처리량	처리량누계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자	누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騒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第6條 (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の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등) ①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等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의 곳에 廢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の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管轄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種類・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중 環境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管轄 市・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重要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檢討하여 그 적합 여부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제출한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廢棄物收集・運搬業 :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第30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①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하되,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 燒却施設은 이를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외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學校・研究機關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研究目的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

2.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의 廢棄物處理施設

**第44條의2 (廢棄物再活用申告)** ①다른 사람의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保管施設 및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表示認證을 받은 製品을 製造하는 者
  2. 肥料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이 設定된 肥料 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副産物肥料를 製造하는 者
  3. 飼料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成分登錄을 받은 飼料를 製造하는 者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製品을 製造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5.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당해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用途 및 방법으로 再活用하는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申告를 한 者(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再活用 대상 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한 者(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3.5.29>
  3.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
  4. 第26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5.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1조제1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고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 6의2.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동조동항제3호의 자
7. 第43條의2第3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命書を 이행하지 아니한 者
  8. 제43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갱신 또는 추가예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
  4.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引繼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者
  5.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6. 第25條의2第3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者
  7. 第25條의2第4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通報하지 아니한 者
  8.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9. 第42條의 규정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0. 제4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 이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生活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한 者
  - 1의2. 第7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을 위반한 者
  3. 삭제 <1999.2.8>
  4. 第25條의5第1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監視委託 사실을 通報하지 아니한 者
  5. 第30條第4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한 者
  6. 삭제 <1999.2.8>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제1항제6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10.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
  11. 第4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3. 제43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4. 제43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通報를 하지 아니한 자
  15. 第47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운반기준) ①영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장소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폐기물을 옮겨 실는 당해 장소에서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허용량은 중량이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5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하도록 할 것

**제6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영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호소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호소에 떠내려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할로젠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페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 3.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라. 처리의 경우

-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그 영업에 필요한 단위 업소별 객석(객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 (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2) (1)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 하여야 한다.
  -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3)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4)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후 발생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1·1>>
- (5)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